

친환경 시설·장비

「골재채취법 시행규칙」 [별표2] 제4호가목 8)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 시설·장비는 아래표와 같음

(단위 : %)

	친환경 시설·장비	증량 기준	증량 비율
전기굴착기		<p>1대 이상 보유 시 (버킷용량 0.7m³이상, 산적 기준)</p>	<p>평가총량의 100분의3</p>
비산면지역제시스템		<p>< 전년도 채취실적 ></p> <p>△ 30만m³ 이하 : 1대 이상 보유</p> <p>△ 30만m³ 초과 ~ 60만m³ 이하 : 2대 이상 보유</p> <p>△ 60만m³ 초과 : 3대 이상 보유</p>	<p>”</p>
차폐형쇄석시설		<p>쇄석시설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</p> <p>※ 다만, 최종 완제품을 이송하는 컨베이어 제외</p>	<p>”</p>

참고 1) 2 이상의 친환경 시설·장비를 보유·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증량 비율은 최대 100분의3을 초과할 수 없음

참고 2) 친환경 시설·장비로 증량을 받은 전기굴착기의 경우 [별표2]제4호가목7)의 초과 보조시설·장비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